

공지사항



'89年度 電子·電氣部門 特別 外貨貸出 推薦 案内

電子·電氣部門 産業設備 投資의 촉진을 위한 特別 外貨貸出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체의 많은 이용있으시기 바랍니다.

다 음

1. 支援対象

- 가. 産業構造 高度化 및 尖端産業育成을 위한 투자에 소요되는 시설재
- 나. 技術開發 및 工場自動化에 소요되는 시설재
- 다. 工場 新·増設에 소요되는 시설재

2. 支援規模

연간 50억불 중 상반기 30억불이며, 중소기업은 연간 20억불중 상반기 10억불(日本地域은 다변화 품목 외의 시설재 도입 가능함)임.

3. 金利: LIBOR+1.5% 이내

4. 使用期間: 10年 이내

5. 融資比率

가. 중소기업: 소요자금의 100% 이내

나. 대기업: 소요자금의 80% 이내

6. 申請書類

- 가. 特別외화대출 추천신청서 3부 (소정서식)
- 나.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계약서 1부
- 다. 카탈로그 및 용도설명서 1부
- 라. 기타 중소·중견기업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

7. 推薦有効期間

추천서 유효기간은 추천일로부터 30일까지임.

8. 其他 細部事項은 本会 輸入課(553-0941/7)로 문의하기 바람.

1989년도 공산품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지도 실시 계획

공업진흥청 공고 제 89-67호

공산품 품질향상을 위한 공장지도요령 제 8조의 규정에 의거 '89년도 공산품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지

도 실시계획을 별첨과 같이 공고한다.

1989년 1월 7일

공업진흥청장

1. 지도대상분야별 지도계획

지도대상분야	지도계획 업체 수
(1) 공업의 공통애로요인이 되고 있는 생산현장 기반기술(금형, 도금, 열처리, 주·단조, 용접, 염색가공, 표면처리)	400
(2) 국산화 및 품질향상이 시급한 기계류 및 부품·소재	120
(3) 대일무역역조개선을 위한 대일수출유망상품	30
(4) 지역별 특화업종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중소기업 애로기술	200
(5) 품질향상이 필요한 주요생활용품	90
(6) KS공장화를 위한 기술지도	100
(7) 정밀정확도 향상 기반조성	
- 정밀정확도 향상 기술지도	70
- 계량·계측기, 주요부품생산업체	30
(8) 기타 정부의 정책수행상 필요한 분야	
- 공업기술조사과제	30
- 디자인·包裝技術	30
計	1,100

2. 지도대상업체

-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체로서 중소기업에 우선함-

- 지도대상분야의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
- KS표시허가를 받기 원하는 기업
- 자율교정업체 수준의 지도를 희망하는 기업

3. 지도내용

- 품질관리 및 표준화
- 생산관리
- 생산현장애로기술
- 시험·분석 및 계측관리
- 디자인·포장기술
- 외국규격획득 등



공지사항



4. 지도방법

- 지도신청업체에 대하여 사전 정밀진단을 실시한 후 기술 및 관리상의 애로사항을 지도과제로 선정
-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선정·파견하여 현장지도
- 공장기술고문제에 의한 지도(실시요령은 별도 공고)
- 기술세미나 또는 강연회 등을 통한 집합지도

5. 지도기간

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서 공장실정에 따라 조정

6. 지도비용

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예산에서 부담

7. 지도업체에 대한 지원

- 제품시험·분석 및 교정검사 수수료 면제
- KS표시허가 및 품질관리 등급사정시 공장심사 생략
- 자율교정업체 지정시 공장평가 생략
- 시설, 시작품개발, 품질향상 등 정책자금 지원
- 공업기반기술향상사업 등 연구개발과제로 선정 지원

8. 지도신청요령

- 지도신청서 1부(당청 소정양식) 작성 제출
- 접수기간 : 89년 1월 5일 - 89년 2월 15일
- 신청서 접수처 : 공업진흥청 기술지도관실, 표준국 및 국립공업시험원(각 시·도 지방공업시험소)

'89기술지도대상품목

(전자·전기관련분야만 발체했음)

○기계류 및 부품·소재

- 전자부품분야(20)

할로겐램프, Ni-Cd전지, 쉴드와이어, 고압 Transformer, 다이내믹 마이크, 발열선, 타이머, 전기기기용 콘덴서, 근접 스위치, 솔레노이드 밸브, 혼스피커, LED, 소형 DC 모터, 반도체 세라믹 콘덴서, 탄탈륨 콘덴서, 아답터, 씨이즈 히터, 지시계, RF 콘넥터, 압력식 써머

스타트

- 대일수출유망상품(2) : 손목시계류, Tape Deck
- 주요생활용품(17)
메가폰, 이어폰, 슬라이드영사기, TV부스터, 소형전구, 전기문걸이, 환풍기, 소형전압조정기, 연탄가스배출기, 전기토스터, 전기냄비, 식기건조기, 전기주전자, 전기찜통, 탑콘포터, 후드믹서, 전기절연테이프

공업발전기금 사후관리 요령

1982.	9.	2개정
1983.	5.	3개정
1984.	4.	12개정
1986.	11.	22개정
1987.	3.	19개정
1988.	4.	18개정

제1조(목적) 이 요령은 공업발전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 융자대상 사업자(이하 "기업사업자"라 한다)가 기금을 융자받아 사업목적에 적절하게 사용하였는지와 사업성과를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합리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함으로써 전자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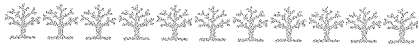
제2조(운용원칙) 기금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관련법령에 규정한 사항과 상공부장관이 통보한 사후관리지침 이외에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.

제3조(기금의 대출) ① 기금사업자는 기금융자 통보일로부터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6개월 이내에 기금을 대출받도록 해야 한다.

② 한국전자공업진흥회장(이하 "진흥회장"이라 한다)은 기금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에 기금을 대출받지 못하거나 대출을 포기한 경우에는 기금을 차순위 사업자에게 지원할 것을 상공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) 기금사업자는 융자받은 기금을 융자대상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.

제5조(사후관리기관 및 대상) ① 기금지원사업



공지사항



의 사후관리는 진흥회장이 한다.

② 기금사후관리 대상자는 한국전자공업 진흥회 (이하 “진흥회”라 한다)가 선정해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체로 한다.

③ 기금사후관리 대상업체의 장은 기금취급 책임자를 임명하고 이를 진흥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6 조 (방법) 진흥회장이 사후관리를 할 때에는 현지실사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융자대상사업의 성질상 현지실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관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나 서류심사 등의 방법으로 조사 확인할 수 있다.

제 7 조 (보고) ① 기금사업자는 매반기별로 공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사업 진도보고서를 해반기 종료일월 20일까지 진흥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기금사업자는 사업종료후 1개월 이내에 별첨서식에 의한 개발실적보고서를 진흥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전항의 개발실적보고서에는 개발건본품, 또는 시험성적서나 카탈로그 등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품을 첨부하여야 한다.

④ 기금사업자가 계획된 기간내에 사업을 종료하지 못했을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유를 첨부하여 사업기간 연장 승인 요청을 진흥회장에게 할 수 있다.

⑤ 진흥회장은 기금사업자로부터 제④항의 사업기간 연장 승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검토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사업기간을 연장 승인할 수 있다.

제 8 조 (종료) ① 진흥회장은 기금사업자로부터 사업종료를 보고받은 때에는 사업계획의 내용과 보고서의 내용을 비교, 분석, 평가한 후 이를 기금운용관리심의회에 보고해야 한다.

② 진흥회장은 기금운용관리심의회에서 사업종료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해기금사업자에 대해 사후관리종료 통보를 해야 한다.

③ 진흥회장은 사후관리결과를 종합하여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
제 9 조 (벌칙) ① 진흥회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융자취급은행장에게 통보해 시중은행 시설자금 최고대출이자를 적용하여 융자기금을 회수토록 한다. 다만, 개발능력을 중도에 상실하는 등 개발계획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기금운용관리심의회에서 인정할 경우에는 일반은행 대출이자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.

1.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
2.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때
3. 융자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
4. 사업계획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때

② 진흥회장은 기금사업자가 제 7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보고를 수행하지 않거나 사업의 진도가 계획에 미달되어 독려를 해도 응하지 않을 때에는 기금사업자에게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해 2 회 이상 경고를 받은 기금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종 경고년도로부터 5년 간 기금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제 10 조 (사업계획의 변경) ① 기금사업자는 기금지원사업의 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. 다만, 사업목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의 일부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진흥회장에게 사유를 첨부해 변경 승인 요청을 할 수 있다.

② 진흥회장은 제 1 항에 의해 기금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의 일부 변경 승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사업목표에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승인을 할 수 있다.

제 11 조 (수수료 납부) 기금운용관리요령 (상공부고시 87-3호)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기금사업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12 조 (장부의 비치) 기금사업자는 별도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고 출납내용을 기록 유지해야 하며 제 7 조의 사후관리보고서 제출하여야 한다.

'88년도 산재보험요율고시 및 적용확대 안내

노동부에서는 '88. 12. 21자 노동부 고시 제88-61

호로 '89년 산재보험요율을 결정 고시한바 있다.

이번 확정된 전산업 평균요율은 1천분의 15.5로서 '88년 16.4에 대비 0.9포인트 인하된 것으로 이로써 기업의 '89년 개산보험료 부담 약 224억원이 경감되게 되었다.

아울러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적기에 산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그 소속 근로자와 기업이 다같이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업체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보험정수과(503-976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1988년 12월 28일
노동부장관

국유특허권 활용 안내

특허청에서는 정부 각부처 공무원이 발명(고안)하여 국가가 승계한 국유특허권의 활용과 기업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공고하니 관련업체는 이를 적극 활용, 기업화하기 바랍니다.

다 음

가. 특허권 내용

권리번호	명 칭	존속기간	발명기관
특허 제5691호	반방해전파안테나	77. 11. 18 - 89. 11. 17	체신부 전파연구소

나. 활용방법 : 특허청으로부터 실시허여를 받아야함.

다. 신청절차 : 소정의 신청서를 특허청(지도과)에 제출하여야함.

라. 문의처 : 특허청 지도과(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3-1, 전화 568-6073, 교환 568-8150~64)

한·영 중소기업기술협력사업 개설 안내

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우리 중소기업의 국제산업협력 다변화 및 EC 지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

여 별첨 내용과 같이 한·영 중소기업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전담 Desk를 당공단 외국인 투자종합지원센터내에 개설하였으니 관련업체에서는 이를 적극 활용,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.

1988년 12월 19일
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

다 음

1. 목 적

가. 영국 선진기술의 대한이전 촉진
나. EC 통합 대비한 대구주 협력기반 강화

2. 사업내용

가. 범 위

- 합작투자 및 기술제휴
- OEM 및 대리점
- 기타 위와 부대되는 사업

나. 지원내용

- 국내외 적정협력선 물색·알선
- 협상 및 계약체결 중재
- 사업계획수립 및 국제기업경영 Consulting
- 정부 인허가 업무지도
- 기타 기술협력 관련 조사 및 분석

3. 한·영사업 전담 Desk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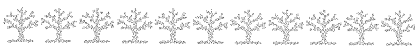
가. 한국측 :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 1명 전담배치
나. 영국측 : 영국정부(상무성) 파견 협력관 1명
공단 상주

- 성 명 : Joseph J Day (1936. 1. 31생)
- 전 공 : 런던대 금속공학, 경영학
- 주한경력 : Dynacast Korea (한·영합작기업)
대표이사 3년

국제입찰 공고 안내

본회 사업과에 접수된 국제입찰을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
1. 국 가 : 이집트
2. 시행청 : The Engineering Industries Corporation, Ministry of Industry



공지사항



3. Tender Cal NO. : 1/88/89

4. 입찰 마감일 : 1989. 2. 20. 12시

5. 입찰 품목

The required quantities will be as follows :

(단위 : 1,000대)

- Pocket Radio	100
- Portable Radio	150
- Mono Radio Cassette	80
- Mini-Mono Radio Cassette	2.5
- Mini-Stereo Radio Cassette	5
- Stereo-Radio Cassette	10
- Car Radio Cassette "Auto Reverse"	10
- Car Radio Cassette "Auto-Stop"	40

- WALKMAN

10

- Speech Recorder

25

- Stereo Double Cassette Radio Recorder

12.5

6. 입찰장소 :

MR. SALAH AHMAD, PRESIDENT

P. O. BOX : 78 Mohamed farid-Postal Code

11518 Cairo, Egypt

Tel : 3605225 Fax : 2023904250

Tlx : 21882 PBADL UN/23381 UN

ATTN : PROGRESS

• 문의처 : 본회 사업과 (553-0941/7, 553-8725)

KOTRA는 우리나라 商品의 対日輸出増大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오는 '89. 9. 1 부터 5일까지 日本 東京에서 開催할 제 2 회 韓國産品綜合展示会 (Made in Korea Fair '89) 参加業体를 다음과 같이 募集하오니 国内業界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.

参加業体 募集 案内

1. 展示会 概要

- 기간 : '89. 9. 1 (금) - 9. 5 (화)
- 장소 : 동경국제무역센터(HARUMI) 동관
- 규모 : 5,000S/M
- 참가업체 : 150개사 내외
- 전시품목 : 대일수출유망품목 및 성가제고 가능품목
- 주최 : - 대한무역진흥공사(KOTRA)
- 일본무역진흥회(JETRO)
- 후원 : - 한국 : 상공부의 주요 경제단체
- 일본 : 통상산업성의 주요 경제단체

2. 参加 案内

- 참가구분 : - 종합상사 및 대기업 그룹관
- 일반기업관
- 중소기업 공동관
- 참가비 : 70,000원/m²
* 장치비 자체부담으로 그룹관은 참가비면제

● 참가신청서 : 대한무역진흥공사 전시부 특별전시과

● 신청 마감 : '89. 3. 31일한 (단, 전시장 소진시 마감)

● 요령 : 당공사 소정신청서 양식

3. 参加業体 支援

- 기본전시장치 무료제공 (단, 그룹관 제외)
- 전시품 무료 발송 통관
- 전시장관리비용 (전화료 제외) 면제
- 상담알선 등 기타 행정지원

4. 問議処

- 대한무역진흥공사 전시부 특별전시과 (전화 : 551-4421/5) (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터내)
- 지방지사
부산 (463-3691/2), 대구 (756-2341/2)
대전 (253-6486/7), 광주 (232-9521/2)
전주 (6-6211/2), 춘천 (3-1683)
청주 (53-4123/4), 창원 (87-1041/2)